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률 및 시험 리뷰2

201812745 김종원

A Table of Contents.

- 1 통신제한조치
- 2 개인정보보호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예외) 통신제한조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와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 -> 우편물 및 전기통신

- 우편물의 검열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함.
- 전기통신의 감청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함.
 - 지득 : 깨달아 앎.
 - 채록 : 필요한 자료를 찾아 모아서 적거나 녹음함. 또는 그런 기록이나 녹음.

판례

- 피고인이 회사 컴퓨터 서버를 통해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영업을 하던 중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28,811건에 대한 파일을 열람하여 내용을 지득한 행위에 대해서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감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감청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전화통화의 일방이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인간의 대화내용에 대해 그 중 대화자 1명이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감청에 해당한다.

통신제한조치

-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절도, 강간, 추행, 강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살인, 인질강요, 상해, 살해, 협박, 공갈 등

문제

-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A.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B.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등의 사이버범죄 행위를 그 감청대상 범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 C. 최근 해킹범죄는 여러 경유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에 접속하는 경우도 많고, 범행 종료와 동시에 자신을 추적할 수 있는 로그기록 등 증거를 삭제하는 수법이 활용되고 있어 범인이 접속해 있는 순간 실시간으로 통신내역을 수집하는 추적기법이 필요하다.
 - D. 전화통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 -> 법원의 허가 필요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사용도수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기록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A.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전기통신 개시 및 종료시간
- B.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C.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D.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개인정보보호와 수집제한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민감정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 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수집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 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방법

• 정보주체의 정보가 필요하고 불이익이 있을 시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증거수집 및 목적 외 이용과 제공

- 수사시관은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이 원칙. 디지털 포렌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도 이와 동일함.
-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수사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 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 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 -> 수사기관도 마찬가지
-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